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외부전문가의 자격 명확화 〉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91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병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
3. 회 부 일 : 2024. 10.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2조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또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조사를 위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나 외부전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김으로써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선임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격을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부정 행위 등의 보고) ①·② (생략)	제22조(부정 행위 등의 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u>외부전문가</u> 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 ----- -----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외부전문기관이나 외부전문가</u> -----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외부감사제도는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을 통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자산총액·

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비상장법인이나

유한회사가 외부감사의 대상임.¹⁾

○ 2023년 12월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총 41,212개사이고, 이 중

주식회사가 37,519개사(상장법인 2,642개사, 비상장법인 40,589개사),

유한회사가 623개사임.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표1]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단위 : 사, %)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총계
	주권상장법인				비상장 법인	소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2022	819	1,591	132	2,542	34,411	36,953	566	37,519
2023	833	1,680	129	2,642	37,947	40,589	623	41,212
증감	+14	+89	Δ3	+100	+3,536	+3,636	+57	+3,693
(증감률)	(+1.7)	(+5.6)	(Δ2.3)	(+3.9)	(+10.3)	(+9.8)	(+10.1)	(+9.8)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3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2024.1.31.)

□ 한편, 2018년 11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하 “내부감사기구”)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법」 제22조2)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시행되었음.

○ 외부감사인은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여야 하며(제2항),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하며(제3항),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제4항).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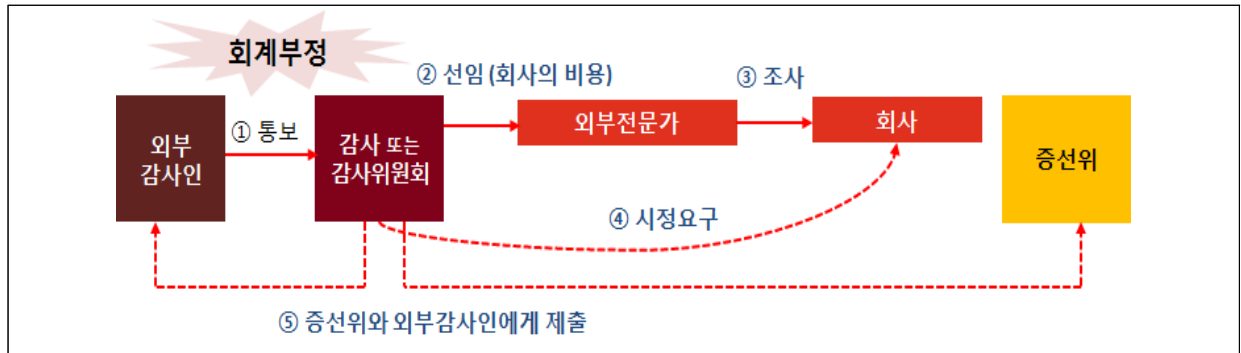
제22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2]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부정 조사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 그런데, 현행법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등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요건,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내부 감사기구가 선임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안내하고 있음.

○ 동 가이드라인은 외부전문가로 법무법인, 회계법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을 선임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 선임 시 회계부정 조사결과에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³⁾, 독립성⁴⁾ 등의 요건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3) 외부전문가가 회계부정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충분히 가진 것을 의미함.

4) 조사결과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외부전문가 선임이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수 있음.

< 외부전문가가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예시) >

- ①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종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이었던 경우
- ③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에게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

[표3]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나.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 및 조사

① 내부감사기구는 (회사가 회계부정 조사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면)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기 전에 경영진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경영진은 내부조사시 회계부정 발생 분야나 조사 관련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적합한 인력 등을 투입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의 내부조사가 객관성·적격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합리적으로 수행)

<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가 필요한 상황(예시) >

- ①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 ② 목표이익 달성 등 경영진에 대한 중요한 보상이나 연임을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 ③ 상장(IPO포함) 또는 금융관계기관 등과의 차입계약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회계부정
- ④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 ⑤ 특수관계자와의 승인되지 않은 자금거래 등 관련 회계부정
- ⑥ 그 밖에 관련 문서를 위조하거나 훼손 또는 거짓 진술 등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③ 내부감사기구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 회계부정 조사를 위한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

- 외부전문가 선임시 회계부정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요건, 예를 들어 전문성 및 독립성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이란 외부전문가가 회계부정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충분히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 독립성이란 조사결과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외부전문가 선임이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외부전문가가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예시) >

- ①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종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이었던 경우
- ③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에게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자문, 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

□ 이에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을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외부 전문가의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령에서 외부전문가의 요건과 범위를 현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으므로, 향후 법률안 심사 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외부전문가의 자격을 단순히 특정하여 규정하게 되면 적격성·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외부전문가도 회계부정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 개정을 하더라도 조사 업무의 적격성⁵⁾, 실제 수행현황⁶⁾ 등을 감안할 때 법률에 ‘회계법인’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상장사협의회는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협의하여 이미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인 상황으로, 외부전문가의 범위를 법령을 통하여 경직적·한정적인 체계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외부전문가가 수행하는 업무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조사로서 회계·감사 관련 기준 및 실무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회계법인이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6) 2019~2024년 회계부정 조사 관련 외부전문가 선임 현황(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 회계법인 56사(61%), 법무법인 16사(17%), 법률사무소 16사(17%), 포렌식 전문기관 4사(4%)

문 의 처
02)6788-5111